

포항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721호 2009. 3. 24(화)

선 람	기 관 의 장

포항시

◀ 입법예고 ▶

○ 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제2009-460호) 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입법예고

「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

포항시장 박승호

2009. 3. 19.

포항시 공고 제2009-460호

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청소년보호법」 제4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및 감시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「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규칙」이 포상금을 노리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파파라치로 인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규칙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의 용어 정의 개정

-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한다

나.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포상금 지급대상을 제한

-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행.재정상 지원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
-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포항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자
-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년3건을 초과한 경우

다. 「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」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 기준 일부개정

3. 관련법령

청소년보호법 제44조

포항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제6조

4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: 여성가족과장, 주소 :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, 전화 : 054-270-3052, 팩스 : 054-270-3070, E-mail : ww0105@ipohang.org)에게 서면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연락처

다. 기타 필요한 사항

5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www.@ipohang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”을 “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 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1.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행·재정상 지원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
4.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포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5. 신고자의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년3건을 초과한 경우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

신고대상 위반행위	포상금 지급액
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·대여·배포·시청·관람·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	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
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	20만원
법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	20만원
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	10만원
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	10만원
법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	10만원
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·대여·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	5만원
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	2만원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. “<u>청소년</u>”이라 함은 <u>19세미만의</u> <u>자를 말한다.</u> 2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“<u>청소년</u>”이라 함은 <u>19세미만의</u> <u>자를 말한다. 다만, 만 19세에</u> <u>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</u> <u>자는 제외한다.</u> 2. (현행과 같음)
제6조(포상지급 대상)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,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와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. 다만,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1.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.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, 공익근무자,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	제6조(포상지급 대상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·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 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 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 고한 경우
<u><신설></u>	4.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 터 6개월 전에 포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<u><신설></u>	5. 신고자의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신 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년 3건 을 초과한 경우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【별표】 <u>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</u> <table> <tr> <th>위 반 행 위</th><th>지급액</th></tr> <tr> <td>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, 매개하는 행위</td><td>20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,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接客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, 매개하는 행위</td><td>20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</td><td>20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</td><td>20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, 대여, 배포, 시청, 관람,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</td><td>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장에, 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 시킨 행위</td><td>10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</td><td>10만원</td></tr> </table>	위 반 행 위	지급액	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, 매개하는 행위	20만원	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,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接客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, 매개하는 행위	20만원	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	20만원	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	20만원	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, 대여, 배포, 시청, 관람,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	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	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장에, 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 시킨 행위	10만원	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	10만원	【별표】 <u>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</u> <table> <tr> <th>신고대상 위반행위</th><th>포상금 지급액</th></tr> <tr> <td>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· 대여 · 배포 · 시청 · 관람 ·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</td><td>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</td><td>20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</td><td>20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</td><td>10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</td><td>10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</td><td>10만원</td></tr> <tr> <td>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· 대여 · 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</td><td>5만원</td></tr> <tr> <td>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</td><td>2만원</td></tr> </table>	신고대상 위반행위	포상금 지급액	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· 대여 · 배포 · 시청 · 관람 ·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	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	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	20만원	법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	20만원	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	10만원	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	10만원	법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	10만원	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· 대여 · 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	5만원	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	2만원
위 반 행 위	지급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, 매개하는 행위	2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,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接客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, 매개하는 행위	2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	2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	2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, 대여, 배포, 시청, 관람,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	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장에, 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 시킨 행위	1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	1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고대상 위반행위	포상금 지급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· 대여 · 배포 · 시청 · 관람 ·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	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	2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	2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	1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	1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	1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· 대여 · 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	5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	2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개 정 안
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	10만원	
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	10만원	
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	10만원	
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	10만원	
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	10만원	
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	10만원	
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4조 4호가목(6)의 환각물질 또는(7)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, 대여, 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	5만원	
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, 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	5만원	
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	5만원	